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심사경과	
국민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2212597	진종오의원 등 11인	’25. 9. 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17.)
				소위 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5.12.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6. 9. 8.)
	2213092	이기헌의원 등 10인	’25. 9.1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17.)
				소위 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5.12.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6 .9. 8.)
	2213503	조은희의원 등 10인	’25.10.10.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17.)
				소위 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5.12.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6.9.8.)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9. 16.)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회장이 성추행, 갑질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단체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재심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된 징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도록 하여 징계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기관·단체에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경우 봐주기 관행으로 인해 징계를 받지 않거나 징계 수준이 현저하게 낮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체육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등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을 현재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보완요구·재조치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도 기존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며, 현재 재정지원 제한 이외에도 해당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체육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체육단체는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함(안 제18조의5제7항부터 제9항까지).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8조의8제2항 및 제18조의9제13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보고 기한을 현재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보완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도 기존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며, 조치요구·보완요구 또는 재조치요구를 미이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9제2항ㆍ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체육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체육단체에 종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체육단체는 제7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다만, 스포츠윤리센터가 서면으로 징계 또는 문책절차의 진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체육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징계 또는 문책 의결 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8의 제목 중 “조치”를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

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인사(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의9제2항 후단 중 “9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90일”을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징계요구와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재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제18조의8제2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9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 또는 재조치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8제2항 및 제18조의9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요구, 징계결과에 대한 보

완요구·재징계요구 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치요구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2항·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조치요구, 보완요구 또는 재조치요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 ⑥ (생 략) <신 설>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체육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체육단체에 종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체육단체는 제7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다만, 스포츠윤리센터가 서면으로 징계 또는 문책절차의 진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체육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징계 또는 문책 의결 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생 략)	⑩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생 략)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인사(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생 략)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이하 "조치요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요구	② ----------. ----------

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0일----------.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 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결과에 대한 재조치요구(이하 “재징계	③ ----------. ----------30일----------. ----------

요구"라 한다)는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징계요구와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재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제18조의8제2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⑬ (생 략)	⑭ (현행 제13항과 같음)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① ----------.
<신 설>	1. 제18조의9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 또는 재조치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1.·2. (생 략) ② ~ ⑤ (생 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